응 시 번 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 진 3cm×4cm (반명함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명	한 글	한 자	영 어	② 주민등록번호		- (만 세)
③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전화	()-()-()
	주 소					
④ 선택 외국어	1. 영어 2. 일본어 3. 중국어 4. 프랑스어 5. 독일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8. 이탈리아어 9. 태국어 10. 베트남어 1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아랍어					
⑤ 시험면제 코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⑥ 시험지역						
⑦ 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수료·중퇴·재학)					
⑧ 자 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⑨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⑩ 응 시 번 호	**응 시 표**	사 진 3cm×4cm (반명함판)

※ 제 회 자격시험

성 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자격명칭·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횟수·응시시험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한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첨부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흡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